(재)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- 0003호

(재)전복테크노파크 JB지신학협력단장 초빙 공고

(재)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,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학 기술개발과 지역인재 양성,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열정과 창의적 업무역량을 갖춘 JB지산학협력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합니다.

> 2025. 1. 3.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

□ 직 위: JB지산학협력단장 1명

부 서	직위/직책	인원	담당업무	비고
(부설) JB지산학협력단	단장 (부설기관장)	1명	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, 글로컬대학 육성·지원,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획 JB지산학협력단 업무 총괄 	계약직 (3년)

가. 공통사항

- O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O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임용일 기준 공무원(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)이 아닌 자 (단, 국·공립대학교 교수는 임용일 기준 휴직한 경우 임용 가능)
- O 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, 현직에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휴직한 자에 한해 임용 가능(임용일 기준)

나. 자격기준

- O 전북지역 대학지원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관리자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※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
 - 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
 -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
 -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
 - 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
 - 5. 대학의 부교수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
 - 6.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- 7. 공공기관, 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
 - 8. 공공기관에서 2급 또는 2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
 - 9. 중소기업 대표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
 - 10.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채용심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
 - ※ 위 각 호의 관련분야는 '산업 및 이공계열, 사회과학* 분야'를 말함
 - * 사회과학: 인류학, 사회학, 경제학, 정치학, 법학, 심리학, 경영학, 지리학, 문헌정보학, 행정학 등
 - ※ 7~8호의 공공기관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정한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.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지방 출자.출연기관을 말함

- 다. 결격사유 * 전북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(임용결격사유)
 - 아래 임용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 될 수 없음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2.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3.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4. 「병역법」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
 - 5.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 - 6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
 - 8. 임용일 기준 공무원인 자 (단, 국·공립대학교 교수는 임용일 기준 휴직한 경우 임용 가능)
 - O 위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어 임용된 자는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그 결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끈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3 임용형태 및 보수 □ 임용기간 : 3년 계약직(연임가능) □ 보수수준 : 연봉제(기본연봉, 성과급, 퇴직금) ※ 보수구성은 기본연봉, 성과급, 퇴직금으로 구성(수당없음) O 기본연봉 : 100백만원 이하 ※ 상한액 범위내에서 임용대상자의 능력,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□ 근무형태 : 상근 □ 근 무 지 : (재)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 O 주근무지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-52 □ 임 용 일 : 2025년 2월 24일(월) 예정 ※ 전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될 수 있음 원서접수 4 □ **공고기간**: 2025. 1. 3.(금) ~ 1. 22.(수), 16:00까지 (20일간) □ **접수기간 :** 2025. 1. 15.(수) ~ 1. 22.(수) 16:00까지 (8일간) □ 접수방법 : 전자우편(이메일) 또는 등기우편 ※ 방문접수 하지 않음 ※ 접수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□ 접 수 처 : (재)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인사혁신팀 채용담당자 O (이메일) recruit@jbtp.or.kr O (등기우편) (54853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.5 전북테크노피크 3층 ※ 지원서 제출 시 봉투에 <응시원서 재중> 표기 요망

□ **문의사항**: 채용담당자(☎ 063-219-2331)

5 지원서류

-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(소정양식)
- ② 자기소개서, 경력기술서, 부서 운영계획서 각 1부(소정양식)
- ③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학위증 사본) 각 1부
 - ※ 해외박사학위는 한국연구재단(www.nrf.re.kr)의 등록필증 및 번역본 제출 필
- ④ 최종 학위논문 요약서 1부(소정양식, 해당자에 한함)
- ⑤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※ [2. 자격요건의 나. 자격기준]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* 포함
 - * 직위 및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※ 직위(직급) 및 직위(직급)별 재직기간, 담당업무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포함
 - ※ 폐업 등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
- ⑥ 주민등록등본 1부
- ① 병역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
- ⑧ 어학인증서, 자격증 사본 등 서류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
- 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(소정양식)

6 심사기준

□ 서류전형

평가항목	심사기준
학력	· 자격기준 부합여부 및 학력사항
전문성	·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 · 관련분야 주요 업무경험 및 실적
조직관리능력	· 부서운영 계획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

□ 면접전형

평가항목	심사기준
전문성 및 전문지식	·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
경영혁신 및 조직관리 능력	· 사업과 경영능력, 리더십
대내외 조정능력	· 대외 관계·교섭 능력, 문제해결 능력
부서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	· 발전비전과 실현가능성 등

7 전형절차 및 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	
원서 접수	2025. 1. 15.(수) ~ 1. 22.(수) 16:00까지	○ 응시서류: [5.지원서류]에 기재된 서류 일체 ○ 접수방법: 이메일 / 등기우편 접수 ※ 접수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※ 이메일 접수 시, [5.지원서류]에 기재된 순서대로 1개의 스캔파일(pdf) 제출 - 이메일제목: 전북TP JB지산학협력단장_성명 - 파일명: 전북TP JB지산학협력단장_성명.PDF	
서류 전형	2025. 2. 4.(화)	○ 심사항목 : 6. 심사기준(서류전형) 참고 ○ 합격자 발표 : 2025. 2. 5.(수) 전후 (법인 홈페이지(www.jbtp.or.kr) 공고 및 개별 통보)	
면접 전형	2025. 2. 14.(금)	O 심사항목: 6. 심사기준(면접전형) 참고 ※ 면접대상자는 "부서 운영방안"에 대해 발표(10분 이내)하며, 발표자료 제출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	
합격자발표	2025. 2. 20.(목) 전후	○ 최종 합격자 발표 (법인 홈페이지(<u>www.jbtp.or.kr)</u> 공고 또는 개별통보)	
임용	2025. 2. 24.(월) 예정		

- ※ 상기일정은 법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 ※ 교육부 훈령 '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' 제13조에 의거 임용자는 도지사가 전북 라이즈 위원회에 추천하고, 전북 라이즈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'전북RISE센터의 장'으로 임명함

8 기타 사항

- ①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②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전형을 받은 자,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자, 자격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및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결정을 취소함
- ③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력서 상 제시된 학위, 경력, 자격증 등에 대해 증빙하지 못할 경우, 해당 내용이 불인정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(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여야 하며,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하여야 함)
- ④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⑤ 접수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⑥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
- ⑦ 임용 이후 법(기관 규정 포함) 위반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 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
- ⑧ (재)전북테크노파크는 『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일명 김영란법)』의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지 않음

9 채용서류 반환

- O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 - 반환대상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자
 - ※ 반환제외 : 채용 확정자, 기관 요구 외 구직자 자발적 제출 서류
 - 청구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
 - 반환방법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전자메일 제출 (recruit@jbtp.or.kr)
 - 기타사항 : 반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, 우편 반송 시 재발송하지 않음.